

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지침 안내



◆ 시행일자: '17.2.10 부터

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, 사업주는 상한 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주가 숙식비를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!



숙식 제공 시, 숙식비 징수 상한 액

숙소 시설 모두 제공	상용 주거시설 (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 등)	임시 주거시설 (한방, 주택 등)
	월 통상임금의 20%까지	월 통상임금의 13%까지
숙소만 제공	월 통상임금의 15%까지	월 통상임금의 8%까지

꼭 기억해주세요.

*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, 숙식제공 형태 등을 꼭 명시합니다.

숙식비 징수 시, 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!

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, 공제동의서를 받은 후 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숙식비 사전 공제 방법



만약,
임금에서 숙식비를
사전 공제하려면
이렇게 하세요!

근로자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
자극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
* 서면 동의서 다운 방법



꼭 주의하세요.

* 숙식비 징수 시 근로계약서 계약내용(부담액 등)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시설사용료는 사전 공제 안돼요!



냉·난방비



전기요금



인터넷 사용료

최소한의 숙식기준은 지켜주세요!



침실

(개인 취침공간
2.5㎡ 이상)



난방

(기름, 가스, 전기 등을
이용한 비탄난방)



소화 시설

(화재감지기 설치,
소화기 비치)

! 문의는 이곳으로 하세요.

고용노동부 1350
외국인력상담센터 1577-0071